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6. 19 선고 2019가단805(본소), 2019가단7240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 · 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(반소원고) C

변 론 종 결 2020. 5. 15.

판 결 선 고 2020. 6. 19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14,07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8. 29.부터 2020. 6. 19.까지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2/3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1. 본소 청구취지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4,263,87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반소 청구취지

원고는 피고에게 23,30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, 2017. 12.경 김해시 D 소재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중 피고가 구조물 및 주차장 공사 부분(이하 ‘이 사건 공사’라 한다)을 시공하기로 하되 공사금액 95,060,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는 위 공사계약 체결 후 직접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무대장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, 이를 기초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.

다.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8. 1. 25. 9,000,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70,000,000원이다.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2, 갑 제2, 3, 1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1)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2016. 11월부터 2017. 8월까지 진주 소재 E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, 2017. 9월 경남 고성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.

그런데 위 3개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는 합계

106,452,127원임에도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110,716,000원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하여 지급받은 차액 4,263,87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장비 및 자재 등을 임차하였으므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1) 먼저 원고가 노무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초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장비 및 자재 등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, 갑 제12호증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다. 소결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① 공사대금 23,176,000원의 역L형 옹벽공사, ② 공사대금 46,089,000원의 L형 옹벽공사, ③ 공사대금 15,000,000원의 주차장 공사를 모두 시행하였다.

그리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④ 공사대금 9,040,000원인 산마루 측구공사도 추가로 시행하였다.

위 각 공사에 관한 총 공사기성금의 합계액은 93,305,000원인데,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70,000,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,305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먼저 이 사건 공사 중 ① 공사대금 23,176,000원의 역L형 옹벽공사, ② 공사대금 46,089,000원의 L형 옹벽공사에 관하여 본다.

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, 원고와 피고가 일부 금액 차이는 있으나 피고의 위 각 공사 시행 자체에 대하여는 서로 이의가 없는 점, 피고 스스로도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각 공사대금이 ① 역L형 옹벽공사와 관련해서는 23,176,000원, ② L형 옹벽공사와 관련해서는 45,895,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.

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부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69,071,000원(23,176,000원 + 45,895,000원)으로 본다.

2) 다음으로 ③ 공사대금 15,000,000원의 주차장 공사에 관하여 살펴보면, 원고는 당초 건축주와 사이에 주차장 공사는 제외되어 있어서 피고에게 주차장 공사 자체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제14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 자신도 건축주와의 법적 분쟁과정에서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,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견적내역서에도 주차장 관련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, 공사견적대금도 사전에 산정되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이상,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, 그 금액은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을 스스로 공제하고 청구하는 금액인 15,000,000원으로 본다.

3) 마지막으로 피고는 ④ 공사대금 9,040,000원의 산마루 측구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가 그 부분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, 을 제4호증의 영상,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로 산마루 측구 공사까지 피고가 맡아서 시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) 소결

그렇다면,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

84,071,000원(69,071,000원 + 15,000,000원)으로 봄이 상당하고,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 70,000,000원을 공제하면, 원고는 피고에게 14,071,000원 및 이에 대하여

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. 8. 29.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. 6. 19.까지 상법이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은정